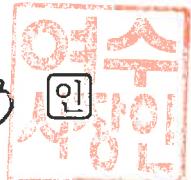


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관공선  
운영·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8 월 11 일

여수시장 2023/08/11  


여수시 조례 제1944호  
붙임 여수시 관공선 운영·관리 조례 1부

## 여수시 관공선 운영 · 관리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여수시 관공선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관공선” 이란 여수시 공유재산 중 행정선, 어업지도선 등 행정목적을 위해 여수시가 운영 · 관리하는 선박을 말한다.
2. “승무원” 이란 관공선에 승선하여 해당직무에 종사하는 선장, 항해사, 갑판장, 갑판원, 기관원, 통신사를 말한다.
3. “승선자” 란 승무원 이외 관공선에 승선한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관공선의 운영 ·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**제4조(시장의 의무)** ①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관공선을 운영 · 관리함에 있어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하여야 한다.  
② 시장은 관공선 안전운항과 승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관공선의 임무)** 관공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행정선 : 여수시 관할 해역 및 섬 지역 행정업무 수행 등
2. 어업지도선 :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단속 및 예방활동 등
3. 정화선 :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, 적조 방제 활동 등

**제6조(운영 · 관리계획 수립)** ① 시장은 관공선 운영 · 관리를 위해 5년마다 관공선 운영 · 관리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관공선의 건조, 수리, 폐선 등 관리계획
  2. 관공선 승무원 채용 및 교육 등 인력 계획
  3. 그 밖에 관공선 운항 ·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총괄관리부서 등)** ① 관공선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행정선 : 여수시 어업생산과, 행정선 보유 면
2. 어업지도선 : 여수시 수산경영과
3. 정화선 : 여수시 어업생산과

②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관공선 업무의 총괄기획
2. 관공선의 건조, 매각, 폐선 등 업무
3. 관공선 운항, 정비, 승무원 복무와 관련한 업무

③ 관공선 승무원의 복무와 관공선 운영 ·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수시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8조(관공선 운항 지원 등)**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5조에 따른 관공선의 업무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항을 지원 할 수 있다.

1. 여수시 관·과·소, 읍·면·동 행정목적
2. 여수시의회 직무와 관련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운항지원을 요청한 경우
3. 여수시와 관련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다른 관공서가 요청한 경우
4. 그 밖에 섬 주민의 편의를 위해 시장이 운항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
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관공선의 안전운항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승선한 승선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승선을 거부하거나 하선 시킬 수 있다.

- 제9조(관공선의 안전운항)** ① 시장은 관공선 운항시 「선박직원법」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승무원을 배치시켜야 하며, 선박검사증서 상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시켜서는 안 된다.
- ② 시장은 관공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휴직·휴무 등 승무원의 부재를 대비하여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.

- 제10조(관공선 운항 점검)** ① 시장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공선 운항을 위해 정기적 또는 수시로 관공선 운항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.
- ② 승무원은 관공선의 안전운항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- 제11조(교육훈련 등)** ① 시장은 관공선 승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·훈련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을 위해 전문교육 기회의 제공이나 전문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2조 (변상의무)**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